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42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이훈기 · 김 윤 · 박지원

김 현 · 최민희 · 이광희

박용갑 · 박선원 · 백승아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진정처리 기한이 내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사의 처리기한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정을 처리하도록 그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진정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진정의 처리기한 등)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진정인에게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진정에 대한 처리 경과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의2(피해자의 조사요구권) ① 위원회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해당 진정에 관하여 피해자를 충분히 조사하여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에 대한 조사로 진정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동일한 진정에 대해서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구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조사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구한 피해자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정의 처리기한 및 피해자의 조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진정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0조의2(진정의 처리기한 등)</u>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처리기한을 30일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처 리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진정 인에게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 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진정에 대한 처리 경과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u><신 설></u>	<u>제36조의2(피해자의 조사요구권)</u> ① 위원회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해당 진정에 관하여 피

해자를 충분히 조사하여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피해자에 대한 조사로 진정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
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동일한 진정에 대
해서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
구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에는 조사할 사람의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구
한 피해자가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